

## 「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월 14일, 장문혁 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19년 1월 2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·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1월 21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장문혁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군계획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한 세부기준 마련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추진 및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(안 제22조 제1항 제2호)  
-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→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추진 및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,

-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기준 중 기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를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로 개정하고,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.
  
- 태양광발전시설은 경사도 15도 이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이 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(2018. 12. 4)되었으나,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행위로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“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. 다만,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8 호에 따른다”를 “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.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</p> <p>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<u>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.</u></p> <p><u>다만,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</u> <u>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.</p> <p>3. 생략</p> <p>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2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</p> <p>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.</u></p> <p>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